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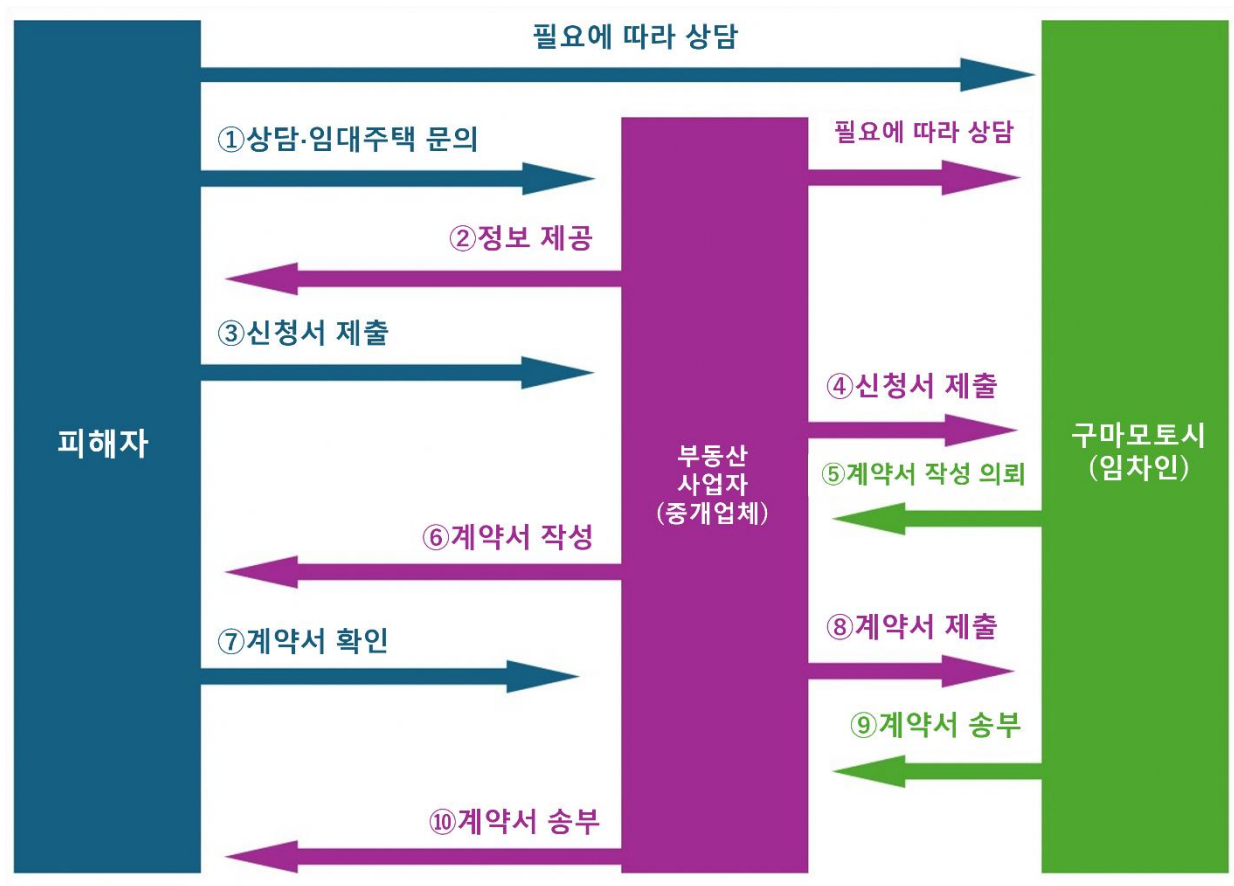
2026 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주택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안내

주택을 잃은 분을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형 응급주택(간주 임시주택)을 제공합니다.

구체적으로는 「피해자」, 「구마모토시(임차인)」, 「주택 소유자(임대인)」 3 자가 정기간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일정 기간 동안 구마모토시가 임대료를 부담합니다.

※ 주택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.

【신청 절차】



① 부동산 중개업체에 문의하여, 구마모토시에서 실시하는 임대형 응급주택(간주 임시주택) 제공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소개 요청임을 밝히고 주택을 소개받으시기 바랍니다.

②~④ 주택을 선정한 후, 신청서류 등(4 쪽 「6. 제출서류」 참조)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⑤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,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개업체에 계약서 작성 의뢰(통지)를 합니다.

⑥~⑧ 중개업체에서 계약서 작성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.
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⑨~⑩ 중개업체를 통해 신청자 및 임대인에게 계약서 등을 보내드립니다.

【문의처】구마모토시청 9 층 주택정책과 총무기획반 전화 : 096-328-2989

임대형 응급주택 제공사업 개요

1. 입주 대상자 요건

다음 (1)~(4)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.

- (1) 재해 발생일 현재 구마모토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
- (2) 이번 재해로 인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1. ① 이번 재해로 주택이 전파, 전소 또는 유실되어 거주할 주택이 없는 사람
 2. ② 주택이 「반파」(「중규모 반파」, 「대규모 반파」 포함)되었으나 주택으로 재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철거하는 사람
 3. ③ 2 차 재해 등으로 주택이 추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, 상하수도·전기·가스·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이 단절되었거나, 산사태 등으로 인해 대피 지시 등을 받아 장기간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 4. ④ 주택이 「대규모 반파」, 「중규모 반파」 또는 「반파」에 해당하며, 「재해구조법」에 따른 주택 응급수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수리 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
- ※ 응급수리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
- ※ 응급수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퇴거해야 합니다.
- (3) 다른 거주 가능한 주택이 없으며, 본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
- ※ 자가주택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·맨션·별장 등이 없어야 합니다.
- (4) 「재해구조법」에 따른 「장애물 제거제도」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

2 임대형 응급주택의 조건

다음 (1)~(3)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.

- (1) 월 임대료가 입주 인원 에 따라 정해진 범위 이내인 주택
- ※ 임대료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입주 인원	임대료
1 인(1 인 가구)	월 5 만 5 천 엔 이하
2 인 가구	월 6 만 5 천 엔 이하

3~4 인 가구	월 9 만 5 천 엔 이하
5 인 이상 가구	월 13 만 엔 이하

※초등학교 취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2 명 이상인 경우, 1 명당 0.5 명으로 환산합니다(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.

(예시) 미취학 아동 1 명 → 0 명, 미취학 아동 2 명 → 1 명, 미취학 아동 3 명 → 2 명, 미취학 아동 4 명 → 2 명

- (2) 구마모토시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한 주택
- (3) 신내진 기준에 따라 건축된 주택(1981 년 6 월 1 일 이후 착공) 또는 내진진단·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이 확인된 주택

3 비용 부담

(1) 구마모토시 부담

항목	내용
임대료	P 2 의 2 (1) 에 따른 금액
공익비(관리비)	임대주택의 임대인 또는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함. ※ 주로 맨션 등에서 공익비를 관리비라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로 처리
퇴거 시 수선비 부담금(보증금)	임대료 2 개월분 이내 ※ 퇴거 시 원상회복(통상적인 마모 및 노후화 포함)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, 퇴거 시 반환을 청구하지 않음
사례금	임대료 1 개월분 이내
중개수수료	임대료 0.55 개월분 이내
열쇠 교체 비용	실제 부담액 ※ 통상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, 사회통념상 필요한 금액을 한도로 함
손해보험료	구마모토시가 포괄계약에 따라 가입

(2) 입주자 부담

전기·가스·수도 등 광열수비 및 기타 전용 설비 사용료,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수선비, 주차장 요금, 반려동물 사육료, 자치회비 등

4 입주 기간

입주일로부터 2 년 이내

※ 응급수리제도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응급수리 신청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 개월 이내가 입주 기간입니다.

※ 입주 기간 만료 전이라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주택을 확보한 경우 또는 응급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퇴거해야 합니다.

※ 임대형 응급주택을 먼저 제공받은 경우에는 응급수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5 이미 개인적으로 계약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

2026 년 7 월 28 일 이후 이미 개인적으로 계약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도, 2 쪽의 「1. 입주 대상자 요건」 및 「2. 임대형 응급주택의 조건」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, 「피해자」, 「구마모토시(임차인)」, 「주택 소유자(임대인)」의 3 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주일로 소급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, 중개수수료, 임대주택 보증금, 화재보험료 등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6 제출서류

■신청 시■

【필수 서류】

- ① 「구마모토시 임대형 응급주택 입주신청서」(서식 제 1 호)
- ② 「서약서」(서식 제 2 호)
- ③ 「동의서」(서식 제 3 호) 또는 「확약서」(서식 제 4 호)
- ④ 「신청서」(서식 제 5 호)

【①~④ 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】

a. <주택이 「전파」, 「전소」 또는 「유실」되어 거주할 주택이 없는 경우>

○재해피해증명서(災害証明書) 사본

※재해피해증명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, 피해 주택의 사진 등을 통해 한눈에 「전파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피해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b. <주택이 「반파」(「중규모 반파」, 「대규모 반파」 포함)되었으나 재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철거하는 경우>

○재해피해증명서 사본

○주택을 철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c. <2 차 재해 등의 우려, 생활 기반시설 단절, 산사태 등으로 장기간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>

○주민표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(주민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원의 주민표를 제출하고, 세대주와의 관계는 기재하되 마이넘버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)

d. <주택이 「대규모 반파」, 「중규모 반파」 또는 「반파」이고, 응급수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수리 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>

○재해피해증명서 사본

○응급수리 신청서 사본

○수리 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e. <이미 개인적으로 계약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>

○「계약 전환에 관한 동의서」(서식 제 6 호)

○ 현재 입주 중인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

○ 위 a~d 중 해당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

【문의처】

구마모토시청 9 층 주택정책과 총무기획반 전화 : 096-328-2989

홈페이지

